

국산신기술의 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

편집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산신기술의 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6년 12월 13일
과학기술처장관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산신기술의 인정(이하 "신기술인정"이라 한다) 방법·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신청대상) ① 신기술인정 신청대상은 국내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로서 인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공업화시험 완료단계 또는 시작제품 제작 단계에 있는 기술로 향후 2년이내에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
 2. 상품화한지 1년 이내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
- ② 신기술인정신청은 기업에서 하되, 대학·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개인 등 기업이외의 자가개발한 기술은 동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코자 하는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신청서의 접수) ①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산신기술 인정 신청서(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기술 및 제품설명서(별지 제1-1호서식)
 3. 기술요약서(별지 제1-2호서식)
 4. 최근 1개년도의 재무제표
 5. 신청기술 적용제품의 표준생산, 공정, 설비 및 품질관리 설명자료(임의작성)
 6. 정부공인기관의 제품시험성적서 또는 개발보고서(있는 경우에 한함)
 7.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있는 경우에 한함)
 8. 기술이전 증빙서류(있는 경우에 한함)
 9. 기타 기술설명자료(있는 경우에 한함)
- ②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가 없이는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신청서의 보완 등) ① 제5조제2항의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형식 및 절차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이 선행요건임에도,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외자도입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도입, 외국용역 도입에 의해 직접 개발된 기술인 경우

3. 신청기술이 타인의 산업재산권등을 침해한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4. 국가안정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기술인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 5 조(운영기관) ① 국산신기술인정제도(이하 "인정제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신청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인정서 발급등에 관한 제반행정 및 서무에 관한 사항
4. 신기술인정표시의 사용승인 및 계약, 사후 조사에 관한 사항
5. 인정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정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 6 조(신기술인정기준) 신기술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수준과 동등하거나 우수하고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히 개선·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일 것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

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신청당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제 7 조(심사) ① 신기술인정을 위한 심사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친다. 다만 1호와 2호의 심사는 제9조제5항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3호의 심사는 제9조제1항의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1. 1차심사: 신청서류에 기재된 기술성, 경제성의 진위여부 및 평가
2. 2차심사: 1차심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기술성, 경제성,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서류 및 면접, 제품확인을 통해 심사
3. 3차심사: 1, 2차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국산신기술인정대상 선정

② 제1항에서 2차심사의 경우 필요시에는 기술적 성능평가와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인정기간) 신기술인정기간은 신기술인정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제9조제1항의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 9 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기관내에 국산신기술인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한 산업계·연구계·학계의 권위자 및 정부관계자 25인 내외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의내에 간사를 두며, 감사는 운영기관의 상임임원중 1인으로 한다.

⑤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둔다.

⑥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비밀유지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사무를 담당하는 제5조제2항의 운영기관의 직원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와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신기술인정의 예고) 과학기술처장관은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하고자 하는 기술의 기술명, 개발자, 인정기간 등을 즉시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

제 12 조(이의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당사자는 공고후 2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입증자료의 작성책임은 이의신청인이 진다.

③ 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전문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운영기관이 정하는 세칙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신기술인정의 고시) 과학기술처장관은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확정된 기술(이하 "인정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한다.

제 14 조(국산신기술인정서의 교부) 과학기술처장관은 인정기술에 대하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신기술인정서를 교부한다.

제 15 조(표시와 사용) ① 국산신기술의 인정서를

교부받는 자는 별표1의 표시(이하 "KT마크"라 한다)를 그 제품·포장 또는 용기, 기타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

② KT마크의 사용기간은 신기술인정기간의 범위내에 한한다.

③ KT마크의 사용에 관한 절차등은 운영기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인정기술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처장관은 국산신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을 적용,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해당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의 제2항에 의한 조세지원

2.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금지원

3. 기술개발촉진법시행 제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구매지원

4.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지원

5.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기술정보 지원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시설장비 지원

제 17 조(신기술인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인정기술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신기술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관보에 고시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신기술인정을 받은 경우

2. KT마크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산업재산권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조사결과 신청서 허위작성 등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5.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을 고의로 누락시켜 국산신기술로 인정되었음이 명확한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현저한 인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취소의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전문분과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8 조(실적조사등) ①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인정기술에 대한 지원책의 강구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정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품질평가를 위한 공장실사 및 건품의 채취를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외에도 KT마크의 부정사용여부 확인, 신청 및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요청한 때에 해당기업은 1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비용부담) ① 심사경비등 신기술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액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 20 조(수당 및 여비)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제도의 운영·심사 및 표시 사용에 관한 사항에 운용기관이 세칙으로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이 제1항의 세칙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국산신기술의인정및사후관리관한규정(과

학기술처고시 제1994-14호, 1994.10.20)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국산신기술의인정및사후관리에 관한규정(과학기술처고시 제1994-14호, 1994.10.20)에 의해 인정된 국산신기술 중 인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국산신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소식

「명예퇴직자·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참여 요청

1. 서울 인력 은행은 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 협력하여 '96. 9. 14. 설립한 공공직업 안정기관으로 취업알선·직업지도·고용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면접실을 활용한 구인·구직 만남의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퇴직을 한 명예퇴직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고령화사회와 수반되는 고령자 취업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요즈음, 경험과 능력이 있는 명예퇴직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인력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코자 「명예퇴직자·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 장소 : 서울인력은행 공동면접실
(TEL : (02) 876-9452~3)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69-10 센츨리타운빌딩 2층,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출구 50m)